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10호**  
**2019. 2. 8.(금)**

## 차 례

###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17호) .....1

### 공 고(5)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공고 제2019-113호) .....2
- 담배소매인 위반업소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고 제2019-123호) .....5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공고 제2019-128호) .....6
-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 보상업무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공고 제2019-129호) .....8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131호) ....9

###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21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133호) .....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137호) .....50

공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98-5	대전로1131번길 12-13	2019. 2. 8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310 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5(신탄진동) 일원의 구)남한제지 이전적지에 추진 중인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공람·공고하오니,
2.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구 역 명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5 일원(신탄진동)

다. 면 적

- 당초 : 147,699m<sup>2</sup> 변경 : 154,593m<sup>2</sup> 증) 6,894m<sup>2</sup>

라. 사업기간 : 2015. 1. 16. ~ 2023. 12. 31.

마. 지정목적

- 공장이전 나대지의 난개발 방지와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택지공급 및 주변여건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도모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로 정주환경 개선

②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대표이사 김은수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다.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③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699	증) 6,894	154,593	100.0	
주거용지	97,269	증) 6,755	104,024	67.3	
공동주택용지	73,779	-	73,779	47.7	
임대주택용지	23,490	증) 6,755	30,245	19.6	
기반시설용지	50,430	증) 139	50,569	32.7	
공원	27,190	증) 66	27,256	17.6	
공공공지	2,841	감) 623	2,218	1.4	
공공청사	1,635	증) 1,393	3,028	2.0	
주차장	1,065	감) 31	1,034	0.7	0.6%이상
도로	17,699	감) 666	17,033	11.0	

④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5일원 (신탄진동)	147,699	증) 6,894	154,59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5일원 (신탄진동)	147,699	증) 6,894	154,593	

⑤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법정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대덕구 도시재생과 (별관4층), 신탄진동 및 석봉동 주민센터

⑥ 관계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042-608-5102)에 비치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 담배소매인 위반업소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행정처분(지정취소)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2. 8. ~ 2. 14. (6일간)
2. 공고장소 : 대덕구 공보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성명	상호	소재지 주소	처분내용	법적근거
이*희 외 1인	미니스톱 신탄진타운점	대덕구 덕암로233번길 1, 1층(덕암동)	소매인 지정취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5. 청문실시

- 일 시 : 2019. 2. 27.(수) 14:00
- 장 소 : 대덕구 소회의실 (대덕구청 3층)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7-19 외 1필지 및 오정동 227-38 외 1필지 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1007호”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1008호” 로 지정 공고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 1. 공고하는 사항

#### 【 기 존 】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적(m <sup>2</sup> )	너비(m)	길이(m)	
건축법상 도로지정	오정동 227-19	17	1.9	8.9	조명근, 이윤종, 이미순, 한국토 지주택 공사
	오정동 227-17	15	1.85	8.1	
		10	1.75	5.8	
	오정동 227-38	21	1.72	12.2	

【 변경 】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적(㎡)	너비(m)	길이(m)	
건축법상 도로지정 (변경)	오정동 227-76	25	1.85	13.9	한국토
	오정동 227-77	16	1.9	8.9	지주택
	오정동 227-78	24	1.72	12.2	공사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 보상업무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의 보상업무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사업의 개요

- 가. 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 나. 사업종류 :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 보상 사업
- 다. 대상공원 : 길치근린공원, 오정근린공원(별첨 토지내역 참조)
- 라. 출입기간 : 2019. 2. 12 ~ 사업 종료 시 까지
- 마.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조사(기본조사)
- 바. 출입대상자 : 한국감정원 직원 14인
- 사.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 아. 문의처 :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 042-270-5561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 042-608-513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02. 08 ~ 2019. 02. 22(15일간)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대상업소 : 대덕구 중리로 45(폭스:천숙희)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2019.01.30.)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02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 - 69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 2. 제정이유

최근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해 취업난 및 주거불안정 등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청년들의 사회참여·청년발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다. 청년 기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

12조까지).

마. 민·관 협치를 통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14조).

사.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아.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새로운대덕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전화 : 042-608-6131, FAX : 042-608-3813, E-mail : kuha714@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담당자 오태훈(전화 : 042-608-61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

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사회 참여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자원 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추천한

## 사람

3. 청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

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의 지급) 구청장은 제8조, 제9조,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국내외 청년·청년단체 등 간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청년단체 (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표창) 구청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로운대덕추진단	
담 당 자 연 락 처	오 태 훈 (042)608 - 6131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재직기간 확대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 놓은 사항으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제6항,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2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23조).

다.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재직기간을 확대

-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안 제23조제7항제1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9항).
- 직장 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에 따른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0항).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1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전화:042-608-6502, FAX:042-608-38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최은호(☎ 042-608-6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재직기간 확대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 놓은 사항으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제6항,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2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23조).

다.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재직기간을 확대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안 제23조제7항제1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9항).

- 직장 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에 따른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0항).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 2019. 2. 8. ~ 2. 27. / 20일 이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장등)”을 “(복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를 “영 제7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4. 30년 이상 : 20일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의 표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일
----	-----	-----

별표 4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출장공무원) ① <u>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② <u>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u></p> <p>③ <u>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12조 (복장등)</p> <p>① (생 략)</p> <p>② <u>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u></p>	<p>제12조 (복장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삭 제>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  
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  
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현행	개정안
<p>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p> <p>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p> <p>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p> <p>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p>	
<p>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인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2. 그 밖에 별표 3의 경조사 특별휴가 이외의 친족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① <u>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p> <p>② <u>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u></p> <p>○ 휴직자의 연가일수 = <math>\frac{12\text{월}-\text{당해년도 휴직기간}}{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math></p> <p>③ ~ ④ (생략)</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 (공가) 영 제7조의2에 따른다.</p>	<p><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제23조 (특별휴가) 영 제7조의3 이외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2.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③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p> <p>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p>

현행	개정안
<p>4.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5. 풍해·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p> <p>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p> <p>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6. <u>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르고, 휴가일수는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7. <u>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⑦ <u>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u></li> <li>2. <u>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u></li> <li>3. <u>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u></li> <li>4. <u>30년 이상 : 20일</u></li> </ol> <p>⑧ <u>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⑨ <u>「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⑩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2018. 12. 13. 지방인사제도과-5085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시(\*특별시 · 도 · 시 · 군 · 자치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신설 2010.7.19.>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 ·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5.12.2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삭제 <2018.12.13.>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

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5.10.>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3.>

## 제2장 삭제 <삭제 2010.7.19.>

**제13조** 삭제 <2010.7.19.>

**제14조** 삭제 <2010.7.19.>

**제15조** 삭제 <2010.7.19.>

**제16조** 삭제 <삭제 2010.7.19.>

## 제3장 휴가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8.12.13.>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2010.7.19., 2018.12.13.>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3.>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5.10., 1996.12.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6.12.2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7.12.22., 1995.12.23., 1996.12.27.>

⑥ 삭제 <2018.12.13.>

##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8.12.13.>**

② 삭제 <2018.12.13.>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6.12.27.]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3., 1996.12.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3.>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 삭제 <2018.12.13.>

##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5.12.23.>

② 삭제 <2018.12.13.>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9.12.3., 2018.12.1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3., 1999.12.3., 2018.12.13.>

⑥ 삭제 <2005.7.14.>

⑦ 삭제 <2005.7.14.>

⑧ 삭제 <2005.7.14.>

⑨ 삭제 <2005.7.14.>

⑩ 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6.12.27.>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8.12.13.>

**제24조** 삭제 <2010.7.19.>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국으로 본다.

**제25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12.27.> [전문개정 1989.4.3.]

#### **제4장 삭제** <2010.7.19.>

**제26조** 삭제 <2010.7.19.>

#### **제5장 삭제** <2010.7.19.>

**제27조** 삭제 <2010.7.1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18.12.13.>

**제1조**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 무 과	
담 당 자	최 은 호
연 락 처	(042) 608 - 6502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건

조례안 내용	의 건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고문료를 현실화 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 의욕 고취 및 법률 자문안의 품질 유지를 기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행 자치법규 체계 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문 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를 월 20만원 내외에서 월 30만원 내외로 현실화함  
(안 제5조).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  
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 면: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 2) 전 화: 042-608-6062
- 3) F A X: 042-608-3811
- 4) E-mail: ywslaw@korea.kr

####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3호) 중 “법률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쟁송 및 소송사건”을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개업중”을 “개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불변기일 도과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소송수행”을 “소송 수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을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으로 한다.

제5조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p> <p>1. (생략)</p> <p>2. <u>수임을 받은 소송사건의 수행</u></p> <p>3. 그 밖에 <u>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u></p> <p>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u>쟁송 및 소송사건</u>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p> <p>제3조(위촉 및 해촉) ① <u>개업중인 변호사</u>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u>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u></p> <p>2. 3. (생략)</p> <p>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p>	<p>제2조(직무)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2. ----- <u>법률사무</u></p> <p>② ----- ----- ----- <u>행</u> <u>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u>----- -----.</p> <p>제3조(위촉 및 해촉) ① ----- <u>개업 중</u>----- ----- --.</p> <p>② ----- ----- -----.</p> <p>1. <u>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u></p> <p>2. 3. (현행과 같음)</p> <p>4. ----- -----</p>

가. 불변기일도과

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생략)

제5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가. 불변기일 도과

나. ----- 소송 수행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5. (현행과 같음)

제5조(고문료 등) -----  
-----  
- 30만원 -----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